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위

-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7. 12. 1(금) 평창군수
- 회부일자 : 2017. 12. 1(금)
- 상정일자 : 제23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5) : 상정
 -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8)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연도 중 보조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동계올림픽 준비사업, 군민중심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15,29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54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50백만원이 증액된 470,912백만원, 특별회계는 395백만원이 증액된 44,382백만원 임.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지방세 2,426백만원, 지방교부세 850백만원, 조정교부금 4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493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9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16백만원이 감액되었음.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74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94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4,007백만원, 재무활동 18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42백만원은 감액되었음,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394백만원, 재무활동 1백만원 임.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용호)

【 검토결과 】

□ 추경예산안 규모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15,29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54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470,91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50백만원(0.89%)
- 특별회계는 44,38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5백만원(0.90%)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150백만원이 증액된 470,912백만원임.
- 지방세수입은 2,426백만원이 증액된 30,690백만원
- 세외수입은 1,516백만원이 감액된 17,114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850백만원이 증액된 234,397백만원으로 특별교부세 2건 85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3건 400백만원이 증액되어 7,160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493백만원이 증액된 156,433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753백만원이 증액된 118,885백만원, 시·도비보조금은 740백만원이 증액된 37,54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대비 497백만원이 증액된 25,118백만원으로, 전년도이월금 49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150백만원이 증액된 470,912백만원임.
- 정책사업은 기정예산대비 4,007백만원이 증액된 396,847백만원
- 재무활동은 185백만원이 증액된 23,099백만원
- 행정운영경비는 42백만원이 감액된 50,96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기능별 세출예산은
 - 국토및지역개발분야 93,470백만원(19.85%)
 - 문화및관광분야 77,769백만원(16.51%)
 - 농림해양수산분야 71,545백만원(15.19%)
 - 사회복지분야 55,705백만원(11.83%) 순으로 배분되었음.
- 조직별 세출예산은
 - 안전건설과 58,445백만원(12.41%)
 - 문화관광과 55,409백만원(11.77%)
 - 자치행정과 53,669백만원(11.40%)
 - 주민생활지원과 51,138백만원(10.86%) 순으로 배분되었음.
- 성질별 세출예산은
 - 자본지출 261,912백만원(55.62%)
 - 경상이전비 104,307백만원(22.15%)
 - 인건비 45,996백만원(9.77%)
 - 물건비 30,745백만원(6.53%) 순으로 배분되었음.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7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4,38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5백만원이 증액된 21,99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1,833백만원으로 660백만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609백만원으로 71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00백만원이 감액된 17,93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종합검토의견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4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편성이후 증가된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이 감소되어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확보분 8억원을 조정교부금등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분 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보조금은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15억원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4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정책사업비 44억원, 재무활동비 1억원이 편성되었음. 이중, 정책사업을 보면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확보 및 변경내시분 18억원을 반영하고, 총액 증감없이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대부분임. 자체사업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26억원을 편성하였음.

- 본예산 및 1회, 2회추경에 예산편성 후 3회추경 예산안에
 전액 삭감하는 사업은 27개사업 1억3천만원으로 다양한 사유가
 있겠으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노력이 요구됨.

《표1》 전액(100%) 삭감사업 현황

(단위: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삭감예산액	비 고
합 계	27개 사업	131,020	
기획 감사실	○진부비행장 이전 감정평가수수료	20,000	본예산
	○정부3.0 추진 우수부서 및 유공직원 시상금	2,000	본예산
	○SNS 서포터즈 원고료	3,600	본예산
문화 관광과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6,552	1회추경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7,598	1회추경
	○평창아라리 체험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3,796	1회추경
	○평창아라리 체험관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4,554	1회추경
	○테마축제 육성 지원 공공요금 및 제세	6,000	본예산
	○테마축제 육성 지원 시설장비유지비	1,200	본예산
	○관광기반시설 벤치마킹 등 지원	5,000	본예산
	○마하생태관광지 망실도난 및 미회수금 보전금	1,000	본예산
주민생활 지원과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지원	500	본예산
	○청소년 수련 및 문화활동 지원	550	본예산
	○청소년 지도자 대회 지원	1,200	본예산
	○휴일보육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지원	3,000	본예산
	○휴일보육 어린이집 운영지원	3,000	본예산
	○다문화가정 교육 및 행사참가 지원	1,000	본예산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970	2회추경
	○행정착오 및 민원처리 지연 보상	500	본예산
자치 행정과	○인적네트워크 활성화 운영	10,000	본예산
	○정보화 능력 우수공무원 시상금	1,000	본예산
	○을지연습 우수부서 시상금	2,000	본예산
환경위생과	○쓰레기 불법투기 및 빈병화수 거부 소매점 신고 포상금	3,000	본예산
산림과	○산림치유지도사(2급)과정 교육지원	10,000	본예산
올림픽추진단	○경기응원 서포터즈 지원	5,000	본예산
올림픽운영과	○K-FOOD 플라자 부지 임차료	20,000	1회추경
기술지원과	○비닐하우스 구조심사	6,000	본예산

※ 예산의결일 : 본예산(2016.12.20), 1회추경(2017. 5.19), 2회추경(2017. 9.15)

○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비로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136건에 586억원이며,

○ 사유별로 보면

절대공기 부족, 사업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승인 지연 등 임.

○ 명시이월비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투자의 적정성에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2》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부 서 별	건수	3회추경안	명시이월액	비율(%)	비고
합 계	136	515,294	58,643	11.5%	
기 획 감 사 실	0	10,587	0	0.0	
문 화 관 광 과	22	55,409	10,955	19.8	
주민생활지원과	4	51,879	1,910	3.7	
중 합 민 원 과	3	2,125	87	4.1	
자 치 행 정 과	5	53,669	1,587	3.0	
재 무 과	1	5,731	109	1.9	
경 제 체 육 과	11	20,608	3,128	15.2	특별회계포함
환 경 위 생 과	8	40,320	3,810	9.4	특별회계포함
산 림 과	2	12,360	214	1.7	
안 전 건 설 과	26	58,445	10,220	17.5	
도 시 주 택 과	9	42,543	7,603	17.9	
올림픽추진단	6	4,831	1,170	24.2	
올림픽운영과	8	11,196	5,483	49.0	
올림픽시설과	6	43,498	2,144	4.9	
보 건 의 료 원	2	14,350	2,331	16.2	
농업기술센터	15	49,347	5,379	10.9	
의 회 사 무 과	0	775	0	0.0	
상하수도사업소	8	31,703	2,513	7.9	특별회계포함
읍 · 면	0	5,918	0	0.0	

※ 2016년도 명시이월 확정액 : 136건/ 551억원(결산서 첨부서류 P445)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결

- 일반회계 세입 : 원안가결
- 일반회계 세출 : 원안가결
- 특별회계 세입 : 원안가결
- 특별회계 세출 : 원안가결
- 계속비사업 : 원안가결
- 명시이월사업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건의사항 : 없음
- 기타 특별한 사항 : 없음

붙임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조서 1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의 결 조 서

1. 예산총칙

- 제1조 :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 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15,293,760	15,458,813
일반회계	470,912,035	14,127,361
특별회계	44,381,725	1,331,452
공기업특별회계	21,991,697	659,751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1,991,697	659,751
기타특별회계	22,390,028	671,701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41,162	22,235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833,000	54,99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09,134	18,274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963,685	28,911
수질개선특별회계	17,937,103	538,113
주택사업특별회계	305,944	9,178

- 제2조 :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 금회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다.
- 제4조 : 2017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 제5조 :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 제6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4,910,178천원으로 한다.
- 제7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9,200,000천원으로 한다.
- 제8조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제9조 :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명시이월 포함)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2. 예산의결 내역

○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
- 세출예산 : 원안가결

○ 특별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
- 세출예산 : 원안가결

3. 채무부담행위사업 : 해당없음

4. 계속비사업 : 원안가결

5. 명시이월사업 : 원안가결